

삼척시 공고 제2017-338호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현행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이관

4.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6. ~ 2017. 5. 16.(20일간)

5. 의견제출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33-570-3297, FAX : 033-570-3134)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 E-mail : skphj@korea.kr

6. 참고사항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삼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제정개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채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채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채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69호, 2017.3.27. 제정]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채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339호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법률 14476호, 2016. 1 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한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과 정의 및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근거를 정함(안 제4조)
- 다.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에 따른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마. 체납액정리표관리, 세입징수 결과 제출, 세입마감, 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안 제13조)

바. 결손처분의 결정,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안 제16조
 사.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아.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안 제1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6. ~ 2017. 5. 16.(20일간)

5. 의견제출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33-570-3297, FAX : 033-570-313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 E-mail : skphj@korea.kr

6. 참고사항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서식 1부.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삼척시금
 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삼척시
 시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삼척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

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채납액 정리부에 그 채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채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채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채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채납처분을 속행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삼척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부	
3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채납액 정리부	
7	이월 채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채납액 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 [별지 제1호서식] [양 쪽]

<input type="checkbox"/>	부과	}	결정결의서 (제5조제1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문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군		년시·군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목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읍면(동)		외 번길 명		
적요	년 시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제5조제2항 관련)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세입연도 시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납부 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 X 297mm (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납 수 납 구분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납기일		수납구분	
	징수결의일 과표액 진화번호 세목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일	부과금액 수납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

297mm X 210mm (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정 수 부 (제5조제4항, 제6조제4항 관련)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 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 부표의	월까지 부표의	추정 부표의	조정액 잔액	조정액		정수액		불납금의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합금		
					본월부까지 누계	본월분 누계	본월부까지 누계	본월분 누계	본월부까지 누계	본월분 누계	대조정 대조정	대조정 대조정	본월부까지 누계	본월분 누계			
총합계																	
헌정시금 합계																	
소계																	
00세																	
00세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관련)

상명	정년월입 (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부과일	최종기한일	가산기한일	가산금	지정지판 시정세 가산금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액 부과총액 가산금 가산금
안부사항 (총)가산횟수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 이월 체납액 정리부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관련)
○○년 시 ○○기(월)분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시·군	과년	과세 번호	과세 번호	중가산금												기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품목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57mm×384mm(복합지 80g/㎡)

※ 정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산으로 정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제10조 관련)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세목	연 시· 군	납 기	과세번 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 일	납부기 한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
1. 체납사유				체납자 주소지 약시·군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복합지 80g/㎡)

(위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재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행선지		3. 차량대장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재조사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2. 생활상황:국민기초생활		없음을 확인함.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결)]

(앞쪽)

결손처분표 (제14조 관련)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국장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시	기본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결)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결)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변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제14조 관련)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시 구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분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제17조 관련)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 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div>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 토 의 건 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 2017 - 341호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삼척시장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소방취약계층 사용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시행
-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지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0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33) 570-3891 ■ FAX : (033) 570-3896

4. 참고사항

- 붙임문서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의견 제출서 1부.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삼척시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

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호, 2017.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시 설 명						
지 원 회 망 시 기	년 월 일					
<p>「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삼척시장 귀하</p>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제명 :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34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7.04.21. - 2017.05.05 (15일간)
3. 말소일자 : 2017.04.2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양○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명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24 목조 (1층·55㎡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21.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양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7-356호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7. 04. 28.

삼척시장

- 붙임 1.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련 법령문 발췌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구획기준) 리·통과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6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리·통은 4~10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리·통·반장) ①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 ②이·통·반장 임명은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③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교체 또는 해촉되었을 경우 신규 임명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 ②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 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제7조(임무) ①이·통장은 읍·면·동장의, 반장은 읍·면·동장과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②이·통·반장은 리·통·반을 대표하고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면·동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1. 행정시책 홍보
2.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 개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복무) ①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 ②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이·통·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 ④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 한다.

제9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 ③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2일전까지 이·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 건의사항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은 다음달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 건의한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별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①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원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①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일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실비반상액) ①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기진작 등) ①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다 읍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2.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3. 모범 이·통·반장 표창수여

4. 이·통·반장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지원

5. 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통·반장 상호간 역량강화와 정보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연수, 체육·문화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임무) ① (생략) ②이·통·반장은 리·동·반을 대표하고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면·동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1. ~ 6. (생략) <u><신 설></u> 7. ~ 8. (생략)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u>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u>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14조(설비변상액)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4조(설비변상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이·통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제15조(사기진작 등) ①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u><신 설></u>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제15조(사기진작 등) ①----- 이·통장----- ----- ----- 1. 이·통장 상해보험 -- 2. 이·통장 선진지 ----- <u>3. 모범 이·통·반장 표창수여</u> <u>6. (현행 제3호와 같음)</u> <u>4. 이·통·반장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 지원</u> <u>5. 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u>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설비변상) ④ 이·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원함.

나. 추계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3,238,000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 이·통장 자살예방 활동 사업비 : 138,000천원(시비)
산출내역 : 27,600천원 × 5년
 - 이·통·반장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 지원비 : 2,250,000천원(시비)
산출내역 : 450,000천원 × 5년
 - 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비 : 850,000천원(시비)
산출내역 : 170,000천원 × 5년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총무과장 이 * 수
연락처	(033) 570-3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세출	647,600	647,600	647,600	647,600	647,600	3,238,000
아동장 자살예방 활동 사업비	27,600	27,600	27,600	27,600	27,600	138,000
이행안정 지역홍보용 신문구독지원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반장 증량제 쓰레기분투지원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재원 조달	647,600	647,600	647,600	647,600	647,600	3,238,000
외존 재원	소계					
	모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647,600	647,600	647,600	647,600	3,238,000
	지방세	647,600	647,600	647,600	647,600	3,23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계						

관계 법령문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존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7-4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47번지 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04월 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47
- 도로의 현황 : 길이 : 88.24m, 너비 : 4m, 면적 : 1,00m²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자목	면적(m ²)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용화리	347	답	3,782	3,682	100	삼**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로관리대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지번 347	
건축주 삼**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2017-근덕면-신축신고-16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100m ²
88.24m	4m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근덕면 용화리 347	100	2017. 4.	삼**		삼**

작성자 : 직급 지방시설7급 심명 길 * 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지방시설6급 심명 박 * 덕 (서명 또는 인)

(2면 중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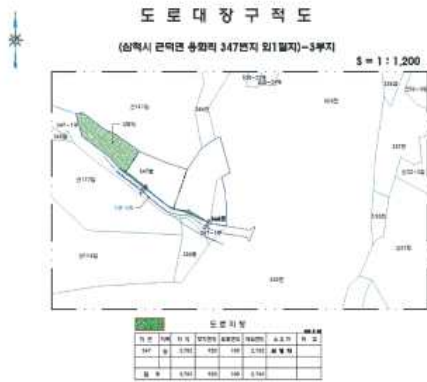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